

CODEX 잔류농약 분과위원회 제31차 회의보고서

박 준 경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서 언

현대 농업에 있어서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및 잡초 방제에 다종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약 소비량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농작물의 잔류에 따른 인체영향과 환경오염과 같은 위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약은 생산의 안정화, 품질 향상등 농산물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농작물, 토양 및 수질의 잔류성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에 의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등과 같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WTO 체제 및 SPS협정 체결로 각 국가간 상이한 기준·규격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식품규격)을 설정·권장하고 있다.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는 1966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농약 200종(CXL, withdrawal, step, EMRLs, GLs 포함)에 대한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본 회의는 1999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 31차 CODEX 잔류농약분과 회의로써 최종보고서(Alinorm 99/24A) 를 요약하였다.

II. 31차 CODEX 잔류농약분과 회의결과

1.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 업무범위 및 개최현황

(1) 업무범위

- ① 개별식품 또는 식품군에 대한 잔류농약 최대 허용기준 설정
- ② 국제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동물용 특정사료에 대한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 설정 단, 이 같은 품목에 대한 기준설정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③ FAO/WHO합동잔류농약모임(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 : JMPR)에서의 잔류농약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목록 작성
- ④ 식품 및 사료중 잔류농약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 검토
- ⑤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한 기타문제 검토
- ⑥ 개별식품 또는 식품군에서 농약과 화학적으

로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 환경 및 산업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설정

(2) 개최현황

1차	The Hague	1.17 - 1.21	1966	15차	The Hague	10. 3 - 10.10	1983
2차	The Hague	9.18 - 9.22	1967	16차	The Hague	5.24 - 6. 4	1984
3차	Amhem	9.30 - 10. 4	1968	17차	The Hague	3.25 - 4. 1	1985
4차	Amhem	10. 6 - 10.14	1969	18차	The Hague	4.21 - 4.28	1986
5차	The Hague	9.28 - 10. 6	1970	19차	The Hague	4. 6 - 4.13	1987
6차	The Hague	10.16 - 10.23	1972	20차	The Hague	4.18 - 4.25	1988
7차	The Hague	2. 4 - 2. 9	1974	21차	The Hague	4.10 - 4.17	1989
8차	The Hague	3. 3 - 3. 8	1975	22차	The Hague	4.23 - 4.30	1990
9차	The Hague	2.14 - 2.21	1977	23차	The Hague	4.15 - 4.22	1991
10차	The Hague	5.29 - 6. 5	1978	24차	The Hague	4. 6 - 4.13	1992
11차	The Hague	6.11 - 6.18	1979	25차	Havana Cuva	4.19 - 4.26	1993
12차	The Hague	6. 2 - 6. 9	1980	26차	The Hague	4.11 - 4.18	1994
13차	The Hague	6.15 - 6.20	1981	27차	The Hague	4.27 - 5. 1	1995
14차	The Hague	6.14 - 6.21	1982	28차	The Hague	4.15 - 4.20	1996
				29차	The Hague	4. 7 - 4.12	1997
				30차	The Hague	4.20 - 4.25	1998
				31차	The Hague	4.12 - 4.17	1999

2. 회의의제

의제번호	의 제 내 용	참 고 문 서 번 호
	회의개회	
의제 1	의제 채택	CX/PR 99/1
의제 2	분과위원회 서기 선정	
의제 3	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	CX/PR 99/2
의제 4	1997/1998년 JMPR의 일반 논의사항 보고	1997 & 1998 JMPR Reports, Sections 2&3
의제 5	잔류농약 섭취량 고찰	CX/PR 99/3 WHO/FSF/FOS/97.5 CX/PR 99/4, CX/PR 99/5
의제 6	식품 및 동물사료중의 잔류농약 검토	CX/PR 99/6 CX/PR 99/6-Add.1 CX/PR 99/7, CX/PR 99/8
의제 7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권고사항	CX/PR 99/9, CX/PR 99/10

의제번호	의제내용	참고문서번호
의제 8	Codex의 농약평가 우선 순위 목록 설정	CX/PR 99/11
의제 9	개도국의 식품중 잔류농약 관련 문제	CX/PR 99/12, CX/PR 99/13
의제10	Codex MRLs을 쉽게 사용하기 위한 규정시행 검토	CX/PR 99/14
의제11	기타사업 및 향후작업	
의제12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의제13	보고서 채택	

3. 회의개요

제31차 Codex 잔류농약 분과위원회 (The 31st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는 1999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6일간) 네덜란드 헤이그, Congresgebouw, Meeting room Rembrandtzaal, churchillplein 10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국 50개국, 참석 국제기구 15개 기구에서 총 248명 참가하였다.

4. 주요 토의내용

1) 시료채취법

식품중 잔류수의약품분과위원회(CCRVDF), 분석 및 시료채취분과위원회(CCMAS) 및 국제낙농연맹(IDF)으로 부터 제기되었던 MRLs과 부합하는 농약분석과 시료채취법에 관한 권고법 개정초안에 대해 분석 및 시료채취 특별작업단에서 논의하기로함.

2) JECFA/JMPR의 조화를 위한 회의

- 잔류의 정의 및 관련 문제해결과 수의약품 및 농약 두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합물에 관한 JMPR와 JECFA의 조화에 대한 논의
- JECFA/JMPR 비공식적인 회의가 1999

년 2월에 로마에서 있었음

- FAO 대표단은 예비적으로 본 조화에 관한 회의의 내용을 보고 하였음
- JMPR에서 논의되는 동안 조화에 관한 회의의 권고안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연기하기로 함

3) 영·유아용 곡류식품에 관한 특별 MRLs 설정

-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위원회(CCNFSDU)는 CCPR에서 곡류식품에 관한 특정 MRLs과 유아식(infant formula) 설정의 가능성에 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함
- 국제소비자단체(CI) 참관인은 Codex MRLs이 어린이의 보다 높은 노출과 감수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
- 위원회는 CCNFSDU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의 독특한 독성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문서를 독일, 미국, EC 및 CI와 협력하여 사무국이 다음 회기까지 준비할 것을 요청함
- 곡류보호협회(GCPF)의 참관인은 화합물과 약물에 대해 어린이가 일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며 WHO 패널이 이런 문제를 재검토하고 영·유아의 감수성 증가와 이 연령그룹에 관한 WHO의

ADI설정의 타당성에 관한 입장을 정립해줄 것을 독려하였음

- 위원회는 JMPR에게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4) 어류중 MRLs 설정

- 빅토리아호 주변 국가가 동호수에서 잡은 어류수출시 잔류농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프리카조정위원회(CCAFRICA)로부터 어류중 잔류농약문제에 대한 논의요청 받음
- 위원회는 CCPR에 제시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관련 자료 제출시 까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 내림
- WHO대표는 양식장의 생산물과 관련된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FAO/NACA/WHO의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어류 조직에서의 잔류가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농약 및 사용환경 관련 자료가 요청된다고 말함

5) 1997/1998 JMPR의 일반 논의사항 보고

- MRLM(maximum residue level for monitoring) 용어설정에 대한 논의
- 1998 JMPR의 주기적 재평가에 대한 논의
 - 위해성 평가에 인체를 포함시킨 생물의학적시험 데이터의 사용
 - 집적되고 누적된 위해평가와 관련된 문제
 - 국제적으로 추정된 단기간의 섭취량(IESTIs)
 - 동물유래 식품의 STMRs와 최대잔류수준 평가의 실례
 - OECD가이드라인 문서의 사용
 - OECD농약 포럼을 통한 최소잔류 데이터 요구사항의 향상
 - 분석과정의 유효성에 관한 데이터 요구사항

- 개도국의 GAP를 반영한 잔류데이터
- 독성데이터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맷
- 독립적으로 잘 관리된 잔류시험
- 화학적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발암성평가의 기본 골격의 사용
- 급성 참고수준 평가를 위한 절차
- cholinestase inhibitor의 판독과 또한 본 JMPR 회의에서 평가된 모든 농약에 대해서 식이 위해평가가 수행됨
- 식품소비 97.5%에 관한 데이터와 median commodity weights는 국제적단기간섭취 추정치(IESTI)를 계산하기 미흡하며 일반적인 집단과 6세 이하의 97.5%의 소비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됨.
- 국제 수준에서 스크리닝 도구로서의 IESTI의 유용성을 평가한 연구된 예가 있을 때 IESTI계산에 사용되는 방법을 토의할 것에 동의함.

6) 잔류농약 섭취량 고찰

- GEMS/Food Regional Diets 개정에 관한 WHO 진행 보고서
- 잔류농약 식이섭취량 예측에 대한 지침기준 개정안에 기초한 국제적 및 국가적 수준의 잔류농약 식이 섭취량 연구 보고서
- 1998 JMPR이 평가한 농약 식이섭취량 예측
- 잔류농약 식이섭취량 평가 향상을 위한 가공과정 연구
- GEMS/Food Regional Diets 개정에 관한 WHO 진행 보고서
 - 1995년도 잔류농약식이섭취량 예측에 관한 FAO/WHO합동협의회의는 식품 지역적/문화적 식습관 그룹을 업데이트하여 확장 FAO Balance Sheet data에 통

계적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 적용을 권고하였음

- diets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cluster분석에 관한 자세한 정보 요청 및 각 정부의 반응을 분석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함

7) 식품 및 동물 사료중의 잔류농약 검토

- 제 5단계에 있는 MRLs안 : 지난 회기에서 제 5단계로 상향된 MRLs/EMRL안에 대해 제 23차 총회에서 논의될 것임

- 제 7단계 및 4단계에 있는 MRLs안과 초안 : CAPTAN(007)등 총 5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관련 내용에 대하여 토의

CAPTAN(007) : 칠레, 프랑스 대표단, EC참관인은 포도주 생산시 발효과정이 고농도의 동물질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포도에 대한 MRL에 관심을 표명함. 회원국 정부는 GAP에 관한 자료 및 MRLs안에 관한 의견을 JMPR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음.

CABARYL(008) : TMDI가 1996년 JMPR에서 낮춘 ADI를 초과했기 때문에 모든 기존의 CXLs를 같은 수준에서의 잠정(temporary) MRLs로 대체하는 것을 총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잠정 MRLs에 4년의 시간틀(timeframe) 두는데 동의함. 2000, 2001 JMPR에서 독성평가 및 잔류에 관한 주기적 재평가할 예정임.

CHLORFENVINPHOS(014) : Brussel sprouts(짜양배추), 양배추(carbbages, head), cauliflower 및 당근의 CXLs를 4년간 주기적 재평가 과정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품목들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기타 모든 CXLs의 삭제를 권고함.

CHLORMEQUAT(015) : EC참관인은 ADI가 신경독성효과를 기초로 함을 언급하

고 JMPR에서 급성참고량을 평가할 것을 요구함.

DIAZINON(022) : 뉴질랜드와 호주 대표단은 본 MRL과 관련있는 통상문제를 강조하였으나 1999년 JMPR에서 논의를 위해 제출된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있으므로 JMPR의 평가를 기다리기로 결정함.

DICOFOL(026) : 위원회는 이과류(Pome fruits)에 대한 MRL안 철회와 1992년 JMPR이 권고한 것처럼 과일에 대한 일반 CXL 삭제 및 우유의 MRL을 8단계로의 진전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DIMETHOATE(027) : 1998 JMPR에 의해 철회가 권고된 CXLs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삭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함.

ENDOSULFAN(032) : 카카오원두, 감귤류(citrus), 커피원두, 면실, 포도주·포도, 헤이즐넛, 메론(수박제외), 복숭아, 파인애플, 이과류, 감자, 대두, sugar beet, 차, 토마토등에 대해 JMPR 잔류평가가 2003년 실시될것이며 이들 식품에 관한 문서를 JMPR의 FAO 사무국에 제출토록 요청함. 위원회는 더 이상 지지 받지 못하는 CXLs의 삭제를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함.

ETHOXYQUIN(035) : 위원회는 1998년 JMPR이 ADI를 낮추기로 한 것을 언급하였으며 1999 JMPR의 잔류평가 동안에 배(pear)에 대한 CXL 삭제를 미루기로 함.

FENTHION(039) : 독일 대표단은 감귤류에서의 잔류는 비가식부위에서만 발견되었으므로 급성노출의 우려는 없다고 하였으나 금년에 계획된 오렌지와 mandarine에 관한 시험 데이터는 2000년 평가때 이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렸음.

FOLPET(041) : 위원회는 1999년 JMPR

에서 치명적인 환경 데이터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1998 JMPR에서 철회가 권고된 MRLs와 CXLs의 삭제를 다음 회의에서 토의하기로 함.

LINDANE(048) : JMPR에서 lindane에 관해 2001(독성학적인 평가), 2003(잔류 데이터의 주기적 재평가)년 평가를 계획하고 있음. 지속적인 사용품목인 lindane에 관한 상세한 자료와 유용한 데이터가 나올때까지 CXLs에서의 삭제(E가 수반된 것은 제외)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함. 위원회는 독성학적 자료가 재평가되는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ADI를 유지하기로 함.

MEVINPHOS(053) : 위원회는 농약제조업자의 broccoli, 싹양배추, cauliflower, 감귤, 오이, 포도, 멜론(수박제외), 완두콩(성숙, 미성숙), 시금치, 딸기, 토마토에 관한 잔류시험데이터 제출에 따라 주기적인 재평가하의 4년간 이들 품목들에 관한 CXLs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품목에서의 CXLs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OMETHOATE(055) : 위원회는 제 32차 회의에서 모든 MRLs 삭제를 논의하기로 함.

2-PHENYLPHENOL(056) : 위원회는 사과에 대한 CXL 축소 권고 하기로하고 감귤류와 배의 CXLs를 지지하는 자료가 1999년 JMPR 재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음.

PARATHION(058) : 위원회는 사과의 MRL 안전을 8단계로 진전시키기로 결정함.

PHOSALONE(060) : 감귤류, 포도, 감자에 대한 CXLs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제출되었으므로 1999년 JMPR 재평가 동안 사과의 CXL은 4년간 유지하기 함.

QUINTOZENE(064) : 1998년 JMPR이 다

음 CCPR회기에 상추(head)와 감자의 CXLs 철회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

THIABENDAZOLE(065) : 위원회는 사과, 감귤류, 배, 딸기에 관한 CXLs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Thiabendazole은 동물약품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CCPR과 CCRVDF 간 협력과 조화가 필수적임을 강조되었고 1997년 JMPR의 권고에 따라 곡류, 양파, 사탕무, 사탕무 잎과 줄기, 사탕무 과육, 당밀, 토마토에 관한 CXLs를 삭제하기로 했음. 또한 2000년 JMPR의 재평가에 유용할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사과, 감귤류, 배, 딸기의 CXLs는 유지하기로 했음.

CARBENDAZIM(072) : 1998 JMPR의 많은 식품의 CXLs 폐지권고에 관해서는 다음 해에 논의하기로 함.

DISULFOTON(074) : 위원회는 정부의견과 다음 해의 토의를 위해 모든 MRLs안을 제 6단계로 넘기로 결정함.

THIOMETON(076) : 모든 CXLs를 삭제하기로 결정함.

CHINOMETHIONAT(080) : 다음해에 모든 CXLs 삭제를 논의하기로 함.

CHLOROTHALONIL(081) : 위원회는 정부와 제조사에 JMPR의 평가를 위해 unbagged bananas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바나나를 종이백에 싸서 키우는 경우를 bagged banana라고 칭함.)

CHLOPYRIPHOS-METHYL(90) : 보리, 귀리, 쌀의 MRLs 안을 제 6단계로 보내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옥수수(maize)의 CXL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CARBOFURAN(96) : 당근, 면실, 가지, 옥수수, maize fodder, 귀리, 양파, ping씨, 쌀(husked rice), 대두, sugar beet,

sweet corn(corn on the cob), 토마토, 밀 등이 지지받을 것이며 이들중 곡류에 대한 CXL을 2002 JMPR의 평가전까지 4년간 주기적 재평가하에 두기로 했으며 추가로 포도, 땅콩, pepper, 해바라기씨, 순무(turnip)에 대한 지지도 있을 것임.

METHAMIDOPHOS(100) : Methamidophos는 Acute RfD이 설정되는 2000 JMPR에 의해 주기적인 재평가가 계획되었으며 이과류(pome fruits)의 MRL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복숭아, 토마토의 MRLs 안과 함께 제 6단계로 회부되었음.

PHOSMET(103) : 위원회는 잔류의 정의를 Phosmet(모화합물)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feijoa와 키위를 제외한 모든 작물에 공급되는 이 농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일부 대표단은 특히 어린이의 급성식이섭취량에 관심을 표명함.

DITHIOCARBAMATES(105) : 제조회사에서 사과주스에 관한 EBDCs(Ethylene bis (Dithiocarbamate))과 ETU(Ethylene thiourea)의 STMR-P추정의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와인에서의 EBDCs과 ETU 값은 이미 30차 회의에서 제시된 STMR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EBDCs의 IEDI는 5개 지역적 식습관그룹(regional diets)에서 재계산되었으며, EBDCs의 IEDI는 ADI 3~36%의 범위의 결과를 얻었음. 사과,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보리, 콩류, 브로콜리, head cabbage, cauliflower, 셀러리, 오이, dry beans, 포도, 호프(dry), 부추, head lettuce, 옥수수, maize fodder, mandarins, 멜론, 귀리, 양파, 오렌지(sour, sweet), 완두콩, 배, 감자, 평지씨유, 호밀, 피망, 여름호박(summer squash), sugar beet, sweet

corn(corn-on-the cob), 토마토와 밀에 관한 EBDC(mancozeb/maneb) 시험데이터가 2002년의 평가를 위해 JMPR에 제출되었음. PTU(Propylene thiourea)의 독성학적 평가는 1999 JMPR에서 계획되었고, Propineb의 잔류 평가는 잠정적으로 2003년으로 계획되었음.

ETHEPHON(106) : 1999 JMPR잔류재평가동안에 MRLs안을 7b단계로 유지시키기로 함.

IPRODIONE(111) : 토마토에 대한 new indoor trials을 하고 있으며 2000년 JMPR 재평가까지 재검토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토마토의 CXL을 주기적인 재평가하에 4년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함.

PHORATE(112) : 위원회는 보리, 평지씨, 토마토의 CXLs을 폐지 권고 및 당근의 MRL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GUAZATINE(114) : 위원회는 1997 JMPR의 권고에 따라 모든 기존의 CXLs 폐지를 권고하는데 동의했으나 1997 JMPR의 권고에 따라 ADI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 농약에 새로운 ADI를 설정하는 동안에 곡류를 위한 지침기준을 0.05mg/kg로 도입하고 감귤류의 지침기준 또한 CXL과 같은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함.

ALDICARB(117) : 바나나의 CXL 폐지 권고됨.

CYPERMETHRIN(118) : 위원회는 1999년 6월 총회이전에 CCRVDF에서 8단계에 있는 MRLs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함. CCRVDF MRLs는 CCPR에서 권고하는 MRLs와 차이 있음. JMPR/FAO합동 사무국은 주기적 재평가 프로그램하에서 Cypermethrin과 α -Cypermethrin이 2000년 JMPR에서 함께 재검토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위해

제조사와 접촉할 것임.

PHENTHOATE(128) : 위원회는 모든 CXLs 을 삭제하기로 함.

AZOCYCLOTIN(129) : 다음 회의에서 기존의 CXLs과 MRLs 삭제를 논의 하는데 동의함.

DELTAMETHRIN(135) : 위원회는 수의약품분야에서의 사용에 관한 JECFA에 의해 추정된 MRLs이 의견을 듣기위해 회람문서 CL - RVDF을 통해 회람될 것임.

PHOXIM(141) : 경작 목적으로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CXLs단계의 모든 물질을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함.

CARBOSULFAN(145) : 오렌지(sweet sour)의 MRLs의 문제와 감귤류의 MRL 설정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해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CYFLUTHRIN(157) : 위원회는 CCRVDF와의 조화를 위해 CCRVDF에 의해 5단계로 진전된 milk(0.04mg/kg on whole milk basis)를 지지하는데 동의함.

GLYPHOSATE(158) : 프랑스대표단은 대사물 AMPA(198)을 잔류정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see para. 105)

OXYDEMETON-METHYL(166) : JMPR에 Demeton-S-methyl과 Demeton-S-methyl sulpon를 잔류정의에 유지시킬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

ABAMECTIN(177) : CCPR과 CCRVDF간 잔류정의의 조화성과 관련하여 모든 MRLs안을 6단계로 회부하기로 결정함.

BIFENTHRIN(178) : 밀에 대해 보다 높은 MRL이 제안되었지만 1997 JMPR이 동물생산물의 MRLs 변화를 권고하지 않았음을 언급함.

MYCLOBUTANIL(181) : see Annex II
CLETHODIM(187) : 동물질의 잔류 평가가 1999 JMPR에 의해 계획되어 있으며 5단계에 있는 Alfalfa fodder, 잡두와 대두를 제외한 콩류, foder beet, 마늘, 양파, 땅콩, 토마토의 MRLs를 6단계에 회부함.

TEBUCONAZOLE(189) : see Annex II
HALOXYFOP(194) :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논의키로하고 토론을 연기함.

TEBUFENOZIDE(196) : 독일은 JMPR에 기존의 GAP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프랑스 대표단은 포도 가공법 연구 부족에 관한 초기의 보류의사를 철회했음.

FENBUCONAZOLE(197) : 대한민국 대표는 위원회에 많은 품목에 대한 자국의 잔류한계가 토론되어야한다고 알림.

AMINOMETHYLPHOSPHONIC ACID (AMPA)(198) : 일부 대표단은 Glyphosate를 유전자 변형 식품에 처치한 결과로 대사물 잔류에 관한 MRLs 설정에 대해 보류의사를 표명했으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대한 정책에 관해 언급함.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대사물 잔류에 관한 MRLs 설정 필요성에 대한 문서를 캐나다, 호주, EC 및 GCPF 참관인, 남아프리카 그리고 미국의 공동준비에 동의함.

○ EMRLs설정을 위한 기준(criteria)에 관련된 논의

○ 어류중 toxaphene 에 관한 EMRL 설정을 요청 관련 : Toxaphene의 ISO name이 camphechlor임을 언급하고 ISO name을 사용하는데 동의함. 좀더 많은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을 요청. 독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여국들이 camphechlor에 대한 자료를

차기회의에서 준비하여 발표 예정.

- EMLs 관련 : DDT(021) - 육류의 EMRL에 대한 논의
- 지침기준 : METHYLBROMIDE(052) - 국제적 기준에 관한 다른 의제를 토론 및 현행 지침기준을 유지 결정

8) 분석 및 시료채취법에 관한 권고

- MRLs과 부합하는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법에 관한 권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농약 분석방법의 선택과 내부 검증법에 관한 기준(criteria) 검토

9) 기타사항

- Codex 농약 평가우선순위 목록 설정
- 개도국의 식품중 잔류농약 관련 문제
- Codex MRLs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시행
- 차기 회의의 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1일 ~ 6일, 네덜란드, 헤이그

5. 작업상황 요약표

제31차 잔류농약분과위원회 회의결과

의 제 내 용	단 계	집 행 기 구	참 고
MRLs 안	8	23차 총회	Appendix II
MRLs설정을 위한 농약잔류검사 시료채취법 개정안	8	23차 총회	Appendix III para. 124-127
MRLs 초안	5/8	23차 총회	Appendix IV
MRLs 안	6, 7	사무국 각 국의 정부 JMPR 32차 CCPR	Annex II CX/PR 99/6
MRLs/EMRL 초안	5	23차 총회	Appendix V
MRLs 초안	3	사무국 각 국의 정부 32차 CCPR	Annex II CX/PR 99/6
농약의 우선 순위 목록 (새로운 농약 및 정기적 재평가 농약)	1	23차 총회 JMPR 사무국 각 국의 정부 국제기구 호주 CCPR	Appendix VII para. 133-137

의 제 내 용	단 계	집 행 기 구	참 고
급성 식이노출평가 방법론	-	JMPR WHO 32차 CCPR	para. 25, 34
분석방법	-	사무국 각 국의 정부 네덜란드 32차 CCPR	para. 128-132
개도국에서 관심있는 농약/식품명 확인	-	남아프리카 각국의 정부 32차 CCPR	para. 139-148
농약의 Codex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쉽게 사용 하기 위한 규정시행	2	각국의 정부 사무국 국제독성정보센터 32차 CCPR	para. 145
EMRLs 설정 "기준"	-	사무국 32차 CCFAC	para. 106-110
어류중 toxaphene의 EMRLs 요구 (검토문서)	-	사무국 각국의 정부 독일 32차 CCPR	para. 112-114
검토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식품과 영유아, 특히 어린이와 관계있는 독특한 독성에 대한 MRLs설정 여부 - 만성 식이섭취량이 ADI를 초과시 사용에 관한 문제지시 -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잔류물 대사와 관련한 MRLs설정 여부 	-	32차 CCPR : 사무국, 독일, 미국, 국제소비자단체, 유 럽연합 호주, 캐나다, 뉴질랜 드, 미국, 유럽연합, 사무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 리카, 미국, 유럽연 합, 곡류보호협회, 사 무국	para. 10-13 para. 75 para. 105

Ⅲ. 결 언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CCPR)는 식품 및 동물사료중의 농약사용 및 잔류에 대한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써 WTO/SPS협정에서 국제적인 식품교역시 마찰이 발생할 경우 CODEX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CCPR에서는 국제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식품 및 동물사료에 대한 잔류농약 최대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농약잔류량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및 시료채취방법을 검토하며 매년 CCPR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WTO/SPS협정에 따라 각국의 식품관련 기준·규격을 CODEX와 일치시키거나 상이한 경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므로 우리나라 또한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및 과학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견 제시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우선으로 관련 자료를 마련하여 논의 제기가 필요하며 현재 식육 중 잔류농약 기준과 수의약품으로 사용중인 농약의 국제 기준이 서로 상이한 문제점으로 국제회의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해당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검토대응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등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석이 요구된다. 또한 Codex MRLs 설정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가능한 우리나라 국민보건과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적 기준치가 정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잔류농약분과회의 및 총회뿐만 아니라 잔류농약분과위 소그룹(특별작업단)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 활동하게하는 국가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